

# 독일의 반려동물 시장 현황 및 제도 조사

(‘22. 12. 30, 조사국제협력팀)

- (시장 규모) 독일은 1940년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용 수가제도를 시행한 국가이며,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보험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(7.83억 달러)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
- (반려동물 수) 2021년 기준 독일 내 반려동물 수는 개는 약 1,070만 마리, 고양이는 약 1,570만 마리, 소형 포유류 및 조류 등을 포함한 기타 반려동물은 약 850만 마리로 약 3,5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<sup>1)</sup>
  - 독일 전체 4,160만 가구중 약 1,955만 가구(47%)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
- (가입률) 펫보험의 경우 개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이며,
  -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
  - 반려동물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약 5%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
- (특이사항) 독일이 영국, 스웨덴과 더불어 펫보험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존재

<표 1> 주요국 펫보험 시장 규모(2021)



1) 독일 Interzoo 뉴스레터(2021.4.15.)

- ① (시스템)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동물복지 시스템과 법률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세금을 통한 반려동물 복지 시설 운영
  - (등록제)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문신 등을 통해 농림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
    - 반려동물과 함께 독일에 입국 및 여행하는 외국인도 반려동물 ID(여권 등)를 만들고 등록 필요
  - (동물복지) 1933년 11월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『동물보호법<sup>2)</sup>』이 제정되었으며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상세한 내용을 규정
    - 2020년 반려견을 하루 1시간 이상 산책시킬 의무를 법제화
  - (입양 절차) 모든 반려동물은 동물보호소(Tierheim)를 통해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<sup>3)</sup>
    - 입양 시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입양 여부를 결정함
    - 반려견 역시 엄격한 사회화 훈련을 거친 후 입양됨

< 주요 심사 항목 >

- 집주인의 애완동물 허용 여부
- 다른 애완동물 보유 여부
- 자녀 여부 및 나이
- 정원 여부
- 가족 구성원 중 알레르기 여부
- 반려동물 산책에 투자 가능한 시간
- 이사 가능성 유무

< 추가 항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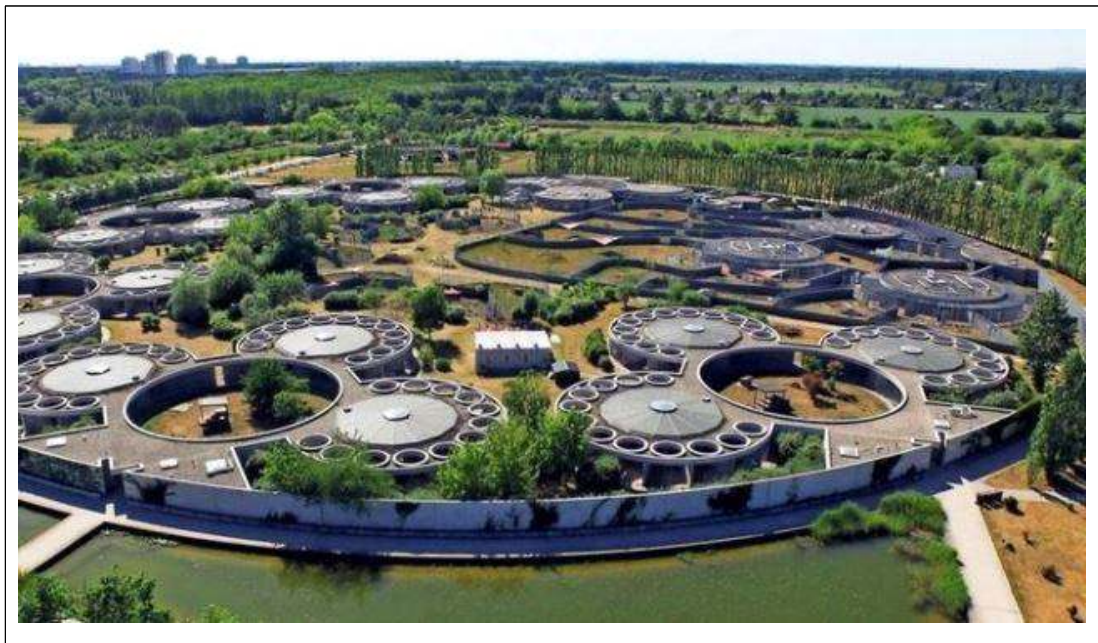
- 방문 점검을 통한 상기 내용 확인
- 가족 구성원 및 기존 애완동물이 입양할 반려동물을 만나는 시간 필요

2) Der Tierschutz

3) 일반적인 '펫샵'은 모두 불법이며,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'전문 브리더'의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종 및 순혈 혈통 보존을 주요 목적으로 함

- **(반려견 보유세)** 독일의 경우 키우는 지역, 견종, 개의 몸무게 및 키우는 반려견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
  - 약 90유로(약 12만 원)에서 1,000유로(약 134만 원) 수준의 세금을 징수
  -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일반 견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며, 맹인안내견의 경우 세금이 면제
  - 세금은 주로 반려견에 의한 공공시설물 오염 청소, 동물 학대 방지, 교육 및 개 짚음 등으로 인한 분쟁 처리 등에 사용됨

<그림 2> 독일 베를린의 티어하임(동물보호소) 전경



- ② **(진료비 수가제<sup>4)</sup>)** 독일은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1940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이며, 식품을 위한 가축의 건강,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수의사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요구되어져 도입됨<sup>5)</sup>
- **(개요)** 최초 시행 시 조례(ordinance)의 형태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형태로 도입되었고, 독일 전역에 120개 항목에 대해 적용

4) 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: GOT(수의사를 위한 수가제도)

5) 농림축산식품부,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(2017)

-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 분리로 이후 연방주마다 다르게 시행되었으며, 1971년 전체 서독에서 적용되는 수가제도가 만들어지며 390개 항목으로 늘어남
  - 1990년대 들어 수의사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1999년 현재의 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(GOT)를 완성하여 약 800개 항목에 대해 적용
  - 2022년 11월 개정을 통해 20여 년 만에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적용 항목을 약 1천 개 항목으로 확대
- **(도입효과)** 표준수가제의 도입은 동물병원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, 반려동물 보호자를 보호하고, 저가의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의사의 자격조건 및 동물의료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었음
    - 표준수가제를 통해 가격 흥정으로 지체되는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고,
    - 반려동물 보호자는 진료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진료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음
  - **(2022년 개편)** 표준수가제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 및 수의학 기술 발전에 맞추어 전면 개정됨
    -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가 항목이 약 20%에서 200% 이상 상향조정 되었음

<표 2> 2022년 동물진료비 수가 변경 예시(반려견 기준)

수가 항목	개정 전 수가	개정 후 수가	상승률
일반 검진	€13.47	€23.62	75%
붕대 처치	€5.13	€17.25	236%
파행 검사	€32.07	€42.63	33%
호흡기를 통한 기관 내 마취	€38.48	€73.52	91%

※출처 : 보험연구원

- 이전에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비슷한 항목의 수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CT 및 MRI 등 진료 항목이 명시되었으며,
- 개정 이전 모든 가금류는 조류로 분류되었으나 개정 후 실용종 및 애완용종 등으로 세분화하고,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파충류 등이 추가됨

□ (국내 현황)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예상 진료비용 고지가 신설됨

- 2022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「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」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'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'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

#### ① 진료비 조사 및 공개

- 소비자단체,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예정
  - 전국 4,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3년 6월 중 농식품부 누리집에 지역별, 진료항목별 최고·최저·평균·중간값 등을 공개할 예정

#### ② 진료 항목 표준화

- 동물병원 별로 상이한 질병 명칭·진료 항목으로 인해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여 진료 항목 표준 개발 및 보급 예정
  -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중이며, 이후 완료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 예정<sup>6)</sup>

6) 다빈도 질병항목 120개를 도출, 이중 우선 100개 항목을 선정하여 2024년까지 공개 예정

③ 진료비 사전 게시

- 진찰, 입원, X-ray 및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 및 배포하고 반려동물 보호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게시
  - 2023년 1월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행
- 2023년 1월부터 고가 수술비용 미안내로 인한 과다청구를 방지할 위해 진료비 예상비용 사전설명 의무화

④ 진료비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추진 예정

- 2023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식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